[양식 제18호]

미성년
 ①후견②후견감독
 종료신고서

년 월 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 됨 ☐ 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(, 1	그	包		= フ	, ,							
① 미 성 년 자	성 명	명	한글	(성)	/ (명)	-		주민-	등록번	호		-	
			한자	(성) / (명)				출생연월일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•			
	주 소												
② 추 전 인	23 17	명	한글	(성)	/ (명)			주민-	등록번	호		-	
	성 명		한자	(성) / (명)				출생연월일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
③ 후 견 감 독 인	성명	。远	한글	(성) / (명)				주민등록번호				-	
	ં છે જ		한자	(성) / (명)				출생연월일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·			
인	주 소	_											
④종료일자 및 원인			<u>)</u>		년	월	일						
⑤재 판 확 정 일			자		년	월	일	법원	경				
⑥ フ]	타 시	}	항										
⑦ 신 고 인	성명	3	한글	(성)	/ (명)	① 또는 서명 주민·			등록번	호		_	
	자 격		①후견인 ②후견감독인 ③기타(자격:)					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전 호	+			
	주 소								이메일]			
⑧제출	인 성 명						주민]등록	번호			_	

작 성 방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④란: "2017. 5. 17. 부(또는 모)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" 등으로 기재합니다.
- ⑤란:미성년후견·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.
- ⑥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⑧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(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).
- ※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